

〈번역〉

北朝·隋唐의 여러 國家와 共同體倫理*

다 니 가 와 미 치 오 저

정 해 인 ** 역

〈목차〉

I. 五胡·北魏 정권과 漢人貴族

II. 균진제와 귀족의 윤리

III. 수당 재통일의 기층구조

I. 五胡·北魏 정권과 漢人貴族

지금까지 주로 화북 한인 귀족층의 지배계급으로서의 자립성을 논해 왔지만, 그 국가권력과 관계는 역사적으로 더한층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호-북조의 이민족 정권하에서 그들이 정치적 의미에서도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확립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호 시대부터 북위 前半에 걸친 시기에 국가는 이른

* 이 글은 谷川道雄, 『中國中世社會と共同體』, 國書刊行會, 1976의 제2장 제2절 제3항 「北朝·隋唐の諸國家と共同體倫理」를 번역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바 胡漢 이중체제에 의해 조직되어 胡族과 漢族은 각기 다른 통치체계 아래 놓여있었다. 호족은 아직 塞外時代 부족 공동체의 면모를 남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특히 國軍組織이 되어 국가권력의 중핵을 형성하고 있었다(前掲의 拙著, 『隋唐帝國形成史論』 第I・II編 참조). 이러한 호족적 색채가 강한 국가들이 중원에 군림함으로써 한족사회를 그 권력 하에 포섭해 나갔다. 그래서 당연히 한족사회의 지도층인 귀족이 관료로 등용되었던 것이다. 귀족출신 관료의 일부는 중앙 정계에서 활약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국정을 이끌었다. 石勒의 張賓, 符堅의 王猛, 또 북위 건설시기의 崔宏·崔浩 부자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 한인 귀족의 많은 숫자가 출신 州郡縣의 장관 혹은 그 屬官이 되어 향리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인 귀족의 관료화가 국가권력으로의 완전한 주체적 참여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권은 胡族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위 太武帝 때 일어난 崔浩의 筆禍事件은 이런 현실을 한인 귀족들에게 통절하게 깨우쳐주었다. 사건의 발단은 최호 등이 집필한 북위 國史가 호족의 반감을 산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최호가 북위를 귀족주의 국가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획책한 것이 호족의 반발을 초래한 것에 있었다고 한다. 주지하듯이 태무제 시대에는 화북 통일사업이 착착 성공하고, 그에 따라서 한인 귀족이 대량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는데, 최호가 태무제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것과 맞물려 이것이 胡族 정권이 금방이라도 한족풍의 귀족국가로 轉化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최호는 주살되고 그 화는 최씨와 인척관계에 있는 山東貴族 각 가문에까지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보면 북위 통일국가에서도 호족과 한족의 정치적 구별은 엄연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북위 국가에서도 호족의 정치적 역할은 주로 군사 방면에 있었다. 중앙 및 지방(州鎮)의 군대는 호족 출신의 군대가

주력이었다. 군공을 세운 호족 병사들에게는 仕官의 길이 열려 있었다. 이는 국가조직이 (적어도 전면적으로는) 귀족제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무제가 환관 宗愛에게 시해된 후 십 몇 년간 북위 궁정 내에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반복된 듯하고 그 기간은 볼 만한 대외발전이 없지만, 獻文帝 시기에 山東 지방의 병합에 성공하자 북위 국가와 화북 사회의 접촉도는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느껴진다. 그 후 단행된 孝文帝의 洛陽 천도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생각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화북 농업사회의 조직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효문제 초기 文明太后 집권 하에 창설된 三長制와 均田制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정책 속에서 당시 호족 정권과 한인 귀족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느껴진다.

II. 균전제와 귀족의 윤리

예컨대 균전제를 본다면 태무제의 통일전쟁 시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행해진 計口授田制에 착안하여 균전제를 그 연장선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오늘날 유력한 듯하다(本書 Ⅲ부 제3장 참조). 북위 국가의 農業管理政策史 상에서 계구수전 → 균전제의 계보를 생각하는 것에는 나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계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으며, 대부분의 논자는 이를 한인 귀족에게 있어서 외재적 권력인 국가의 정책(따라서 한인 귀족 억압책)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호족 특유의 정책으로 보는 입장까지 존재하는데, 과연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여도 좋은 것일까. 확실히 계구수전제의 배후에는 徙民政策이라고 불리는 強勸에 의한 피정복민 정책이 있었고 균전제도 또한 강권의 간섭을

전제로 한 일종의 토지소유 제한책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강권의 작용이 앞과 같은 견해들을 낳은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소 지나치게 단순한 이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계구수전제의 배후에 있는 사민정책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피정복민을 수도 및 그 외 중요지점의 주변으로 이주시켜 그 지점에서 균현제적 지배를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계구수전제는 이들 이주민의 보유 노동력에 따라 給田한 것으로 한족사회의 기본체제인 자영농민의 창설을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땅에 遺利 없고 사람은 遊手 없게”¹⁾ 라는 균전제의 이념과 공통되는 발상이 있고 이 발상을 따져보면 광범위한 자영농민의 세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세계의 재건은 前漢 董仲舒 이래의 과제였으며 漢一代의 대토지 소유 제한책에 의한 그 의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三國 이후의 새로운 특색은 대토지 소유의 제한과 동시에 소농민에 대한 給田策을 내세운 것이며 屯田 → 占田·課田 → 均田의 계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계구수전제 역시 이 계보의 일환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발상한 것은 어떤 사회 계급이었을까. 정책의 입안자로서 고유명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균전제의 李安世 뿐이지만, 그가 趙郡의 名族인 李氏 출신인 점은 간과할 수 없다. 六朝貴族 즉 대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균전제와 같은 대토지 소유

1) [역자주] 『魏書』 권7상, 高祖紀, 孝文皇帝 太和 원년(477) 정월 조, “丙午, 詔曰, ‘… 今東作既興, 人湏肄業. 其敕在所督課田農, 有牛者加勤於常歲, 無牛者倍庸於餘年. 一夫制治田四十畝, 中男二十畝. 無令人有餘力, 地有遺利”(144쪽); 同, 太和 9년(485) 10월 조, “丁未, 詔曰, ‘… 爰暨季葉, 斯道陵替, 富強者并兼山澤, 貧弱者望絕一廛, 致令地有遺利, 民無餘財, 或爭畝畔以亡身, 或因飢饉以棄業, 而欲天下太平, 百姓豐足, 安可得哉? 今遣使者, 循行州郡, 與牧守均給天下之田, 還受以生, 死爲斷, 勸課農桑, 興富民之本”(156쪽).

제한책이 귀족 측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에 일종의 논리적 모순이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육조귀족의 계급적 기반은 직접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자영농민을 농촌의 근간 부분으로 하는 사회와의 에토스²⁾ 적 관계에 있었다. 즉 對象世界에 대한 귀족의 윤리적 관계와 그것이 낳은 사회적 명망[聲望]과의 상호관계이다. 거기에 있어서 귀족의 대토지 소유는 자영농민과 경합관계에 빠지는(民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 크게 경계되고 오히려 그들의 구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當爲가 되었다. 사대부의 마땅한 모습으로 인식된 輕財重義, 즉 자기의 자산에 대한 청렴·검약·止足·구제 등의 생활 moral은 그 토지 소유의 존재형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균전제의 이념과 귀족적 moral에 있어서의 토지소유 관념은 반드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통의 정신마저 느껴진다. 그렇다면 균전제가 억제하려고 기도한 대토지 소유란 어떤 것이었을까. 다음 章에서 논하듯이 그것은 사치와 영리 즉 토지 소유자의 私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대토지경영이다. 이런 경영은 필연적으로 자영농민과 경합관계가 되어 이를 파멸시키고 兼併者와 無產者라는 양극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정황은 앞의 사대부적 moral에 이반될 뿐만 아니라 토지와 노동력의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 국가경제의 불합리가 초래된다.

이러한 대토지 경영의 담당자가 현실에 귀족층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말일 것이다. 귀족계급이 그 기반으로 삼는 사대부적 moral을 망각하고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향은 귀족계급의 지위안정, 즉 문벌제 발달의 경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리하여 그들은

2) [역자주] 에토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에게 도덕적 감정을 갖게 하는 보편적인 도덕적·이성적 요소”를 말한다.

점차 그 본래의 계급적 기반에서 유리되어 가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균전제라는 것은 귀족 본래의 경제윤리가 호족의 강권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의 토지법으로 체제화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효문제의 문벌주의 정책 이전의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公共性 이념에 뿌리를 둔 胡漢의 합작정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III. 수당 재통일의 기층구조

그러나 효문제 친정기의 이른바 한화정책은 국가의 존재형태 그 가치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종래의 종족적 구별은 뒤로 물러나고 士庶의 구별에 의해 관료체계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국가권력 속에 한인 귀족제가 침투하고 남조 문벌제의 영향도 당연한 결과로 강하게 수용되었다. 한인 귀족제는 이렇게 해서 국가권력과 유착하여 이른바 귀족제의 체제화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귀족계급의 지배적 지위는 국가권력에 의해 보증되고 고정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귀족제의 퇴폐를 초래하였다. 한인 귀족 중에 사대부적 moral이 결여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효문제 이후의 특징이다.

그러나 효문제의 정책도 한인 귀족을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권력의 담당자로 만들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도 軍事의 주요 수행자는 여전히 호족 출신의 장병이었다. 그러한 관계 하에서 한인 귀족이 정치적 우위에 섰을 때 호족 장병들은 근본적인 모순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 일찍이 軍士는 국가의 柱石이라는 명예를 지녔으며 거기에는 立身の 길도 열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한인 귀족의 走狗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이 모순의 격발이 중앙 羽林軍의 변란과 六鎮의 폭동이라는 사태를 전개시켜 전국적인 城民 반란이라는 상황을 낳고 북위의 와해를 결정적이게 만든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앞 전서에서 자세하게 논하였다(前掲의 『隋唐帝國形成史論』 第Ⅱ編 참조). 또한 이 내란을 맞이하여 한인 귀족이 그 鄉里의 민중을 군사적으로 결집시킴으로써 기존의 지위를 지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고찰하였다고 생각된다(前掲의 拙著). 그래서 이미 서술한 것이지만, 한인 귀족(鄉帥)과 그 결집된 鄉里民(鄉兵)의 관계는 귀족과 鄉黨의 일상적 관계를 군사적으로 기능하게 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즉 귀족계급이 정권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직 그 일상에 보유하고 있던 잠재세력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하려고 했던 것이며 중국 중세사회의 기층구조인 공동체 세계는 여기에 다시 분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국가체제로 제도화되는 점에서 이 단계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향병집단을 유력한 기초로 하여 형성된 西魏 府兵制는 그 후 北周·隋·唐의 군사적 골간을 이루어 중국의 재통일 사업에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귀족적 에토스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창설된 균전제가 이들 각 통일국가의 농업관리체제를 이룬 것과 동질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귀족적 에토스의 국가체제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귀족제 지배의 사회구조 내면에 모종의 변화를 낳았을 것 예측된다. 나는 그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지향된 새로운 타입의 귀족제를 賢才主義, 新貴族主義, 열린 귀족주의 등으로 불러 왔다(前掲의 拙著). 앞에서 말한 향병집단의 구조 속에도 그러한 새로운 경향이 看取되는데, 이 경향이 隋 이후의 과거제로 제도화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까지 북조 후기에 기원하는 중국 재통일의 조류를 귀족에 대한 국가권력의 壓服으로 보는 이해가 행해져 왔다. 그러나 그 국가는 어떠한 계

급의 지배체제였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실한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 나 자신의 수당제국에 대한 이해는 호한 두 종족의 공동체 사회가 상호 침투함으로써 합체하여 신귀족주의의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중세적 공동체가 結晶한 형태이고 그 의미에서 중세 국가의 완성이라 부를 만하다. 이 완성체의 직접적 原基形態는 西魏-北周일 것이다. 本書 제Ⅲ부 제2장에서 논한 西魏 「六條詔書」의 이념은 이 국가가 얼마나 귀족적 에토스에서 자기를 관철하도록 애썼는지를 또렷하게 나타내고 있다.